삼정 KPMG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48 | October 2026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예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계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

- [예규]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소득세법 6

- [판례]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된 사건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 [판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심판례]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 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 [예규]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
- [예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16

- [판례]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한 부분도 적법함 (국승)
- [판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국승)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지방세법 20

- [심판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대상 기준을 출자자들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출자자들로 볼 것인지 여부 등 (경정)
- [예규]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법인세법

[예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계산 방법
서면-2025-법인-2285, 2026. 2. 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2023년에 결의하였고, 해당 이익배당 결의 전에 동법 제462조의 3에 따라 2022년에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2022년 결의한 중간배당 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2023년 결의한 이익배당 금액 중 잔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코멘트]

- 2022.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서 2023. 1. 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 ☞ 대상예규는 개정 전·후에 각각 결의된 배당이 존재하는 경우 공제순서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6-법규국조-0839, 2026. 10. 7.

비거주자가 취득·보유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인은 ‘17년부터 ‘22년까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20년 베트남 현지 발생 소득과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하다가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된 경우 국조법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재출의무) 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 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국조법 제58조 제2항 및 국조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2항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등의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항 제19호 라목은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자본거래로 규정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소득세법

[판례]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사안] 원고는 2010. 10. 12. A사의 주식 전부(18,910,797주)를 B사에 양도하고 B사로부터 신주 724,973주(지분율: 9.3%)를 발행받았음("이 사건 주식교환").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특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았고, 회계처리 시 주식양도차익 27,789,292,268원(원고가 취득한 B사 주식의 시가 30,719,064,917원과 A사 주식의 장부가액 2,929,772,649원의 차액)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하였음. 원고는 2015. 10. 21. 위와 같이 계상된 자본잉여금 중 24,039,071,206원("이 사건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 6,377,176주를 취득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잉여금을 재원으로 실시한 무상증자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에게 배당소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6. 8.에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3,502,580,910원(가산세 포함), 2020. 6. 9.에 2015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음.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 본문은 그중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상법」 제287조의 37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위와 같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원심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단] 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들에서 사용되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잉여금을 뜻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의 회계·상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특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함.

_계속

[코멘트]

- 1심은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라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3구합79364 판결), 원심은 더 나아가 무상증자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조특법에 따라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개별 주주에게로 부가 이전된 부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누락 내지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증자에 따라 이미 현실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의제배당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증자에 따라 원고가 그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한 때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6333 판결).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

[사안] 원고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 사건 과세기간")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액뿐만 아니라 2018년에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이지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2019년으로 이월된 금액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켰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별 한도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가 적용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부인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재계산하여 2023.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판단]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은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종전까지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국가별 한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에서, 후자만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달라졌는바, 이러한 개정 내용 및 취지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을 바탕으로 하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해석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임. 당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2조 역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공제액에 대해서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향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종전의 일괄 한도 방식을 적용한 이월공제액이 잔존한 경우 이를 국가별로 안분하는 방식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마련한 바 있음. 나아가,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는 기간과세 원칙을 채택한 소득세제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후속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의 적용 국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코멘트]

- 1심은 소득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7항은 동일 과세연도에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사업장은 한곳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 사실상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폐지된 일괄 한도 방식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목적과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및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공제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121 판결), 원심은 소득령 제117조 제7항이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항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도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중과세의 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관행, 세율과 같은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한다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소득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령 제117조 제7항에 따라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울산) 2026. 4. 2. 선고 2025누10104 판결), 대상판결도 이를 수긍함.
- 한편,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 시 제57조 제2항은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를 위하여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 기간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칙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이 적용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 승)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

[사안] 원고는 1999. 6. 3. 설립되어 국내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6. 4. 4. 비상장법인인 A사(“이 사건 법인”)가 발행한 주식 전부인 20,000주(“이 사건 주식”)를 5,000,000원(1주당 250원)에 취득한 후, 2019. 11. 21. 원고의 최대주주의 며느리인 특수관계인(“B”)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위 취득금액과 같은 액수에 양도하였고(“이 사건 거래”), 2020. 3. 31. 이 사건 주식 관련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8,4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963,000,000원을 익금산입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2021. 11. 25. 소득자를 B, 소득금액을 963,00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1항 가액이 아닌 제2항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1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2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이러한 법리는 제2항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아울러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단] 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한 것임(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에 따라 다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가액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_계속

[코멘트]

- 1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도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5. 8. 22. 선고 2024구합71015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3. 27. 선고 2025누8296 판결)과 대상판결 모두 동일하게 판단함. ☞ 대상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리가 영업권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심판례]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 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기각)
조심 2026서0883, 2026. 9. 18.

[사안] 청구인 A, B, C("청구인들")는 1984년 설립되어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D사("쟁점발행법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E사(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쟁점인수법인")의 주주임. 쟁점발행법인은 2023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으로 2022. 12. 29. 쟁점인수법인과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쟁점영구채")을 체결한 후 쟁점영구채를 발행하였음. 처분청은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에게 쟁점영구채와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2025. 10. 1. 청구인들에게 2023.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함.

[판단] 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영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인수법인이 인수하였으며,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예고통지(2025. 7. 29.) 이후에 미지급이자와 추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살피건대,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결손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영구채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영구채 계약서를 보면 이자지급을 제한없이 연기할 수 있으며, 쟁점영구채의 만기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60년으로 사실상 쟁점발행법인이 이자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코멘트]

- 재경부는 특정법인이 적정이자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법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면서 다만, 이는 경제적 실질이 인정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며, 경제적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 체결일, 채권자·채무자의 정보, 대여금액, 대여기간 및 상환일,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상환 지연 시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를 회계장부에 적법하게 계상했는지, 계약 이행상황 등을 고려한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2, 2026. 5. 29.). ☞ 대상심판례는 쟁점발행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이자지급능력이 불분명한 점,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서상 발행조건에서 이자지급을 횟수 제한없이 연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만기가 최대 60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구채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이해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예규]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구분기장한 입목을 토지와 별개자산으로 보는지

기준-2025-법규재산-0116, 2026. 9. 7.

골프장 조성 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한 입목을 토지 및 코스와 구분하여 기장하였더라도, 해당 입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코멘트]

-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 집행기준 94-0-6(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은 "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골프장 조성 시 구입·식재하여 토지 및 코스와 구분 기장한 미등기 입목을 '부동산등'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50% 이상(80% 미만)으로 계산하여 불균등 유상증자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미등기 입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경우 80% 이상이 되어 상증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4항 제3호가 적용되어 순자산가치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미등기 입목을 토지와 별개의 자산으로 보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 한편, 국세청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는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그렇지 못한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가액 전부를 포함한 금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부동산거래관리과-812, 2010. 6. 14.).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라도 법인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부동산등'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예규]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4274, 2026. 9.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법」 제273조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코멘트]

- 조특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특례세율(10~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 한편, 국세청은 상증령 제15조(가업상속)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법」 제287조의 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를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서면-2019-법규재산-2914, 2022. 5. 31.). ☞ 대상예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상법」 제269조(준용규정) 및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이전을 가업승계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결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출자지분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국세기본법

[판례]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한 부분도 적법함 (국승)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사안] 원고는 2016. 4. 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을 마친 후 2016. 12. 31. 폐업하였으며, 2016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조사청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이 사건 세무조사”)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함 없이 2022. 5. 27.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당초 처분”). 원고는 2022. 12. 20. 조사청에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조사청은 202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재통지하였고(“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원고는 2023. 11.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되었음. 피고는 2024. 1. 8.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과 통지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우회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종료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의무를 지우는 한편 납세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임.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3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달리 이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조사청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 소정의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그 자체는 위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기는 하나, 당초 처분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취소된 것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는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단] 가 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 소정의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재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재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또 다시 취소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새로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원고에게 다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임.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이 지난 후에 그 조사결과가 통지되었더라도 이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_계속

[코멘트]

- 1심은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아 실제 2023. 11. 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상,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로 인해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5구합50095 판결), 원심은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재통지가 이루어지는 절차적 과정에서는, 세무조사 종료일부터의 경과 기간만을 기준으로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그로 인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재통지를 받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법정 기한을 지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인천) 2026. 2. 10. 선고 2025누10225 판결), 대상판결도 이를 수긍함.
- 과거 대법원은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선행 통지를 직권취소한 다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후행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했다면 그것은 후행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6736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40922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한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국승)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사안] 원고는 매장묘분양 및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6. 7. 21.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인 A사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2. 21. 설립된 회사임. 원고는 납골공원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 5. 3. A사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 5. 24. B사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2. 9. 11. 착공하였고, 2006년경부터 납골시설을 분양하기 시작함. 피고는 ① A사가 이 사건 사업 추진자금 명목으로 2000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B사로부터 차용한 261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원고가 업무대행보수의 일종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으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A사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사로부터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였다는 업무대행보수 중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③ 원고는 2012년부터 계속하여 A사에 대한 선급금을 계상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선급금 잔액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2017년 및 2018년 법인세 관련하여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9. 9. 2.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각 처분”).

[판단]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음(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7,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원고의 법인세 신고 이후에 증액된 본세와 가산세의 세액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2014, 2015,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서 등과 이후의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후속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각각의 납세고지서 내용을 상호 비교, 대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단] 중 위 각 해당 부분 자체로 인해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에 관한 관련 규정들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당초의 각 납세고지서 등을 배제한 채 오로지 나중에 이루어진 해당 각 처분과 관련된 각 납세고지서만을 가지고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특정가능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가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당초 처분의 산출세액과 경정된 산출세액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이 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는지, 나아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관한 하자가 존재하였더라도 이미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여지가 있음.

_계속

[코멘트]

-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최초 법인세 신고 이후 2차례 증액결정을 거친 처분인데, 그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가산세액이 전부 누적된 수치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본세와 가산세가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을 위반하여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3누10903 판결), 대상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지방세법

[심판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 대상 기준을 출자자들 전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출자자들로 볼 것인지 여부 등 (경정)
조심 2025지1534, 2026. 9. 22.

[사안] 청구법인은 2021. 12. 24.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 B, C, D("출자자들", B, C, D를 합하여 "쟁점출자자들")와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 계약(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22. 1. 26. 서울시 소재 토지와 건축물("쟁점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제57조의 2 제3항 제5호("쟁점감면규정")에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이후 처분청은 쟁점출자자들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청구법인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인 2022. 2. 18 E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출자자들은 조특법 제3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었던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모두 납부함), 2025. 3. 18. 쟁점감면규정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감면규정을 해석할 때 조특법 제31조 제7항의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 개인주주들 전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있는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ⅰ)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어야 하고, ⅱ)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점, 출자자들 중 B, C, D는 중소기업 통합에 따라 본인들의 임대사업장(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였다가 5년 이내에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본인들의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여 임대사업장별 사업의 동질성 요건이 결여된 경제적 실질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57조의 2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게 된 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다르긴 하나, 그 이유만으로 조특법 제3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 개인주주들 전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개별 출자자들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반면, 출자받은 법인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법조문상 명백히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추징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출자자들 중 B, C, D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판단] 또한, 처분청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징 요건은 각각의 내국인 출자자들이 양도
_계속 한 지분이 100분 50 이상인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서 출자자들 중 어느 1인의 출자지분 양도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추징 요건이 성립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규정에서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지분별로 추징할 것인지, 전체를 추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추징 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특법 제31조 제7항은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아니한 출자자'는 이월과세액의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쟁점 감면규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취득세 추징 대상 사업용재산은 전체 이월과세액 중 추징되는 세액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자들 중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아니한 A의 현물출자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코멘트]

- 조특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조특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항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특법 제31조 제7항은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대상심판례는 조특법상 현물출자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의 구조를 감안하여 현물출자 받은 법인(통합법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범위를 정하여 출자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출자자(A)의 현물출자 재산을 해당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예규]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법제처26-0394, 2026. 9. 8.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등기·등록이 없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고, 그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코멘트]

- 질의법인은 차량 제조자가 제작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은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법제처의 대상 유권해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3항 제2호에서 차량등을 제조·조립·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를 차량등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취득시기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차량 제조자가 제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취득 시기를 정하려는 규정일 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단서가 원시취득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의 취득 시기 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음.
- 한편, 행안부도 제조자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채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부동산세제과-1173, 2026. 4. 6.).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상무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주미현
Directo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오혜주
Directo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우진욱
Directo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주정연
S.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KPMG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